

의안번호	제 492 호
의 결 연 월 일	2020년 월 일 (제 회)

2021년 가칭 은여울고등학교 설립 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20년 8월 25일

2021년 가칭 은여울고등학교 설립 계획안

의안 번호	492
----------	-----

제출연월일 : 2020. 8. 25.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 위기 학생, 학업 중단학생에 대한 대책으로 치유형 공립 대안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충북의 인재로 성장시키고자함
- 위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 현황 및 설립규모

학교명 (가칭)	설립 규모		시설 규모		위 치	개교 예정	비 고
	학급	학생	부지(m ²)	건물(m ²)			
은여울 고	3	45	9,772	4,612	충북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5	2021.3	

나. 학교형태: 초·중등교육법 제 60조의 3에 근거한 치유형 공립대안학교

다. 학교운영형태: 기숙형 중고 통합학교

라. 설립개요

- 교육대상: 도내 돌봄과 치유가 필요한 고등학생
- 교육과정 운영 방향
 - 자기이해와 감정표현을 통해 성찰과 치유가 일어나는 교육과정
 - 자기주도적 배움을 통해 스스로의 진로를 모색하는 교육과정
 - 손-가슴-머리의 조화로운 발달을 통한 삶과 연계된 교육과정
 - 지역과 세계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교육과정
 - 자발적 참여와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과정
 -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융합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과정

마. 예산 소요액 및 조달방안

(단위 : 천원)

학교명 (가칭)	시설 규모		재 정 사 업			조달방안
	부지(㎡)	건물(㎡)	부 지 매입비	시설비	계	
은여울고	9,772	4,612	374,601	3,311,816	3,686,417	자체예산

바. 학교설립 예정지 위치도



3. 추진현황

- 2020. 3. 가칭) 은여울고 TF 및 개교준비팀 운영
- 2020. 5. 설립계획 수립
- 2020. 6. 도의회 설명회 (장소:은여울중)
- 2020. 8. 교육환경평가 심의
- 2020. 8.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4. 향후 추진계획

- 2020. 9. 학교설립계획안 의회 심의, 학교홍보
- 2020. 10. 신입생 모집
- 2021. 2. 독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
- 2021. 3. 개교
- 2022. 7. 국제교육원 중부분원 이전 및 리모델링
- 2023. 3. 이전

2021년 가칭 은여울고등학교 설립계획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학업중단학생 발생 및 대안학교설립 요구
2. 비용추계의 전제
 - 가칭) 은여울고등학교 설립
 - 물가상승률 배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합 계
계	13,975	1,347,896	2,324,546	3,686,417
자체예산	13,975	1,347,896	2,324,546	3,686,417

4. 부대의견 :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혁신과 문성효
연 락 처	043) 290 - 2258 E-mail : tolermoon@korea.kr

관 계 법 령

□ 가. 초·중등교육법 제60조(각종학교)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교원의 자격) 제1항, 제23조(교육과정 등) 제2항·제3항, 제24조(수업 등), 제25조(학교생활기록), 제26조((학년제),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30조의5(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동의 제한), 제30조의7(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2017. 1. 10.)

제7조(학기운영 및 학년제) ① 대안학교의 학기 운영은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② 대안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년 구분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① 대안학교의 수업연한은 법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 본문에 따른다. <개정 2009.11.5.>

② 대안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교육과정)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를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운영하여야 한다.

□ 다. 충청북도교육청 공립대안학교 지원 조례(2016.10.28.)

제2조(정의)

1.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을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공립대안학교"란 충청북도교육감이 설립한 교육기관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5조(대안교육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안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보급
2. 소질·적성 개발 및 인성교육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한 기숙형 프로그램 운영
4. 대안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 및 지원
5. 그 밖에 대안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